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879호, 제880호
- 다. 제출일자 : 2023. 5. 30.
- 라. 회부일자 : 2023. 6. 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제1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1) 세입결산

【일반회계】 해당없음

【소방특별회계】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B/A)
소방특별회계	945,971	950,036	950,045	949,831	12	202	99.9

- 세입 예산현액은 9,500억 36백 만원이었으나 실제 9,500억 45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9,498억 31백 만원을 수납하고, 12백 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2억 2백 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임.

2)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일반회계	893,165	-	-	-	-	-	893,165	893,165	-	-	-	-	0 (0.0%)

-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931억 65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31억 65백 만원을 모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0원임.

【소방특별회계】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합계	1,839,136	4,065	2,746	1,879	125	-	1,843,201	1,816,314	5,866	-	5,866	1,727	19,293 (1.0%)
일반 회계	893,165	-	-	-	-	-	893,165	893,165	-	-	-	-	0 (0%)
특별 회계	945,971	4,065	2,746	1,879	125	-	950,036	923,149	5,866	-	5,866	1,727	19,293 (2.0%)

-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931억 65백 만원과 소방특별회계 9,500억 36백 만원을 포함하여 총계예산 규모로 총 1조 8,432억 1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98.5%인 1조 8,163억 14백 만원을 지출하고 0.3%인 58억 66백 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인 192억 93백 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 예비비

【일반회계】

-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예비비 사용은 없음.

【소방특별회계】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1건에 1억 25백 만원으로
 - 소방학교 부족 교육비 1억 25백 만원임.

○ 이체

- 예산 이체는 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3건에 18억 79백 만원으로
 - 응급의료기금 매칭을 위해 예산 변경 18억 40백 만원
 - 소방학교 부족 교육비 각각 38백 만원과 1백 만원임.

○ 예비비

- 예비비 사용은 소방특별회계 2건에 27억 46백 만원으로
 - 청와대소방대 이전 배치 출동여건 조성 11억 49백 만원
 -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지급 15억 97천만원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58억 66백 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58억 66백 만원이며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8,432억 1백 만원 대비 0.3%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92억 93백 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조 8,432억 1백 만원 대비 1.0%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고
2022	1,843,201	19,293	1.0%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 잔액 : 163억 35백 만원
- 낙찰차액 잔액 : 17억 1백 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7억 44백 만원
- 보조금정산 잔액 : 5억 13백 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해당없음
-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893,165	-	-	-	-	-	893,165	893,165	-	-	-	-	0
2021	852,693	-	1,165	-	-	-	853,858	853,336	-	-	-	-	0.1
2020	821,229	-	12	-	-	-	821,241	821,241	-	-	-	-	0

가) 집행잔액 (불용액) (결산서 p.19)

- 일반회계 세출은 전액 소방안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회계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전액 집행함.

나. 소방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B/A)
2022	945,971	950,036	950,046	949,831	13	202	99.9
2021	896,524	899,934	902,173	902,016	5	153	99.9
2020	856,889	870,212	871,955	871,837	1	117	99.9

가) 개요

- 세입 예산현액은 9,500억 36백 만원이었으나 실제 9,500억 46 백 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9,498억 31백 만원을 수납하고, 1천 3백 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2억 2백 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37~40)

- 소방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현액 9,500억 36백만 원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9,500억 46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일부 세입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간 세수추계의 차이가 3천만원 이상 혹은 50% 이상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다한 항목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기 타 사 용 료	16,893	62,323	62,323	45,430	268.9%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주차차단기 인식 카메라 및 징수시스템 설치('21년 12월)로 주차 수입 증가
증 지 수 입	96,200	51,176	51,176	△45,024	△46.8%	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소방청 주관으로 증지수입 감소(신규채용 증지수입 없음) 예산추계 대비 민원실 증지수입(방염처리 성능검사, 위험물 인.허가 등) 감소
공공예금이자수입	82,365	836,483	836,483	754,118	915.6%	일반회계전출금 조기 집행으로 세출계좌에 실제 평균잔고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 서울시 재무과의 잉여자금 정기예금 가입으로 이자수입액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불 용 품	286,357	527,982	527,982	241,625	84.4%	특수구조단 소방선박 교체(2020년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매 각 대						12월 준공)로 인한 노후 선박 매 각 지연(2022년 매각 완료)으로 매각대금 증가
위 약 금	213,396	43,692	17,229	△169,704	△79.5%	경기 등 영향을 받아 예측이 어려워 최근 5년('20~'16년)간 징수전망액으로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위약금 발생 감소 미수납액 26,463천원은 연도말 부과로 '23년 1월 납부완료
그 외 수 입	527,682	917,952	917,952	390,270	74.0%	각종 잡수입으로 예측이 곤란하여, 예산추계시 최근 5년('20~'16년) 징수액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징수액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과오납 및 각종 정산 환급금, 감사 결과 환수금 등 증가
지 난 연 도 입 수	16,500	161,450	20,425	144,950	878.5%	납부독촉 및 적극적인 압류에도 납세 태만, 무재산 등 체납으로 지난연도 수입 증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 징 금	40,078	69,300	68,400	29,222	72.9%	최근 5년('20~'16년) 징수액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부과액가 증가
이 행 강 제 금	11,416	16,000	0	4,584	40.2%	최근 5년간('20~'16년) 징수액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부과액 증가
기 타 과 태 료	460,156	686,421	655,714	226,265	49.2%	징수액 차이가 크지 않아 최근 3년간('20~'18년) 평균징수액으로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과태료 부과액의 증가
보전수입 등						
민 간 용 자 금 회 수 수 입	3,420,000	1,805,000	1,805,000	△1,615,000	△47.2%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용자금 지원 중도상환액의 감소

- 정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예산액 1천 7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6천 2백만원으로 4천 5백만원(268.9%)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주차차단기 인식 카메라 및 징수시스템 설치('21년 11월)로 주차 수입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표] 최근 3년간 기타사용료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2022	16,893	62,323	62,323	45,430	268.9%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21년 12월)로 수납액 증가
2021	22,895	9,418	9,418	△13,477	△58.9%	코로나19로 인한 기타사용료(광나루안전체험관 강당 대관료 등) 수입 감소,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지연으로 수납액 감소
2020	16,637	7,243	7,234	△9,394	△56.5%	코로나19로 인한 기타사용료(광나루안전체험관 강당 대관료 등) 수입 감소

- 무인 주차시스템이 '21년 11월에 설치된 점에서 미루어 살펴보면, 세입예산 편성 시점에서 차년도에 주차 수입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 주차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추계를 계상치 못하여 이처럼 세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를 크게 한 것은 신중치 못한 세입추계라 여겨지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증지수입은 예산액 9천 6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5천 1백만원으로 4천 5백만원(46.8%)이 감소하였는데,
- 그 사유는 '21. 2월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주관인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예산 편성 시점('21.11월)에 이를 간과하여 신규채용 증지수입 감소분

을 추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점과 방염성능시험 의뢰 건수 등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주변 환경변화와 사업 변동성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세입추계 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최근 5년간('22 ~ '18) 증지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2	2021	2020	2019	2018
합계	51,176	54,286	80,294	100,979	131,497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0	0	18,755	18,505	40,085
민원실 증지 수입	51,176	54,286	61,539	82,374	91,412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산액 8천 2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8억 36백만원으로 7억 54백만원(915.6%)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소방특별회계의 평균 잔고액과 잉여자금 정기예금가입에 따른 이자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표] 최근 3년간('22 ~ '20)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2	2021	2020
합계	836,483	66,932	70,378
세출계좌 이자	208,008	66,932	70,378
정기예금 이자	628,475	0	0

-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용품매각대금은 소방차량, 기타물품 등의 노후화에 따라 그 용도를 폐기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예산액 2억 86백만원 대비 2억 42백만원(84.4%)이 증가한 5억 28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주요 증가 사유는 119특수구조단 노후 선박 교체 사업에 따라 신규 선박 도입이 '20. 12월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 예산편성 당시('21. 10) 노후 선박 매각대금에 대한 추계를 간과하여 노후 선박 매각(701호, 703호)¹⁾ 대금 2억 1백만원이 추가 징수 결정됨에 따른 것과,
- 코로나 이송 건수 증가로 전담구급차 운영을 위해 불용을 연기 하였던 구급차에 대한 불용처리 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다 치밀한 사업추진 계획과 조사를 통해 예산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2022년 불용차량매각대금 세입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분		2021년 예산추계			실제 매각 세입	
내용연수	차종	매각대수	평균매각단가	징수전망	매각대수	세입금액
계		60		266,500	67	520,159
12년	고가차	1	10,000	10,000	1	22,500
	굴절차	7	70,000	70,000	2	25,679
	조명배연차	4	8,000	32,000	4	11,136
10년	펌프차	11	8,000	88,000		
	화학차	2	5,500	11,000		
8년	행정차 등(이륜차포함)				14	62,405
	구조공작차	2	10,000	20,000	3	26,820
	구조버스	1	500	500	1	2,650
	홍보차	1	10,000	10,000		
	이동안전체험차	1	10,000	10,000		
5년	구급차	30	500	15,000	39	163,699
20년/15년	소형선박	-	-	-	2	201,340
7년	수상오토바이				1	3,930

1) 2021.7.5. 노후 관공선(701호,703호) 처분 계획, 2022.12월 선박 인계 및 세입조치

- 위약금은 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 및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예산액 2억 13백만원 대비 1억 7천만원(79.5%) 감소한 4천 4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2022년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방관서	계약명	계약방법	계약금액	징수 금액	지체 일수	비 고
1	소방재난본부	현장활동 감염방지 소모품 구매	조달구매	219,375	2,797	17	지연배상금
2	소방재난본부	구조장비 구매	공개입찰 (일반경쟁)	117,333	751	8	지연배상금
3	소방재난본부	소방청 방화신발 통합구매 (소방청 통합발주)	조달구매	464,750	13,594	39	지연배상금
4	소방재난본부	68m 고가사다리차 제조 구매 (2021년 사고이월 사업)	1인 수의계약	2,067,457	26,463	16	지연배상금
5	증량소방서	인명구조 기초장비 소모품 구매	1인 수의계약	6,414	87	17	지연배상금
합 계				2,875,329	43,692		

※ 전체 지연배상금 5건 중 공개입찰(일반경쟁) 1건, 조달구매 2건, 수의계약 2건

- 이는 예년에 비해 위약금 등의 발생이 줄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상기 [표]의 지연배상금 건 중 지체일수가 17일인 ‘현장활동 감염방지 소모품 구매’ 사업은 감염방지 보호복 제조공장의 직원들이 집단으로 코로나에 확진되어 공장 제조라인이 가동 중지됨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어 지연배상금 약 280만원을 징수한 것이고,
- 지체일수 8일인 ‘구조장비 구매’건은 계약업체가 납품장비 중 일부 장비²⁾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 납품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2) ① 영상송수신장비 세트 1대, ② 현장용 무선 마이크 2세트, ③ 수난 구조용 자켓 75벌, ④ 스마트클리브시스템(수난 구조용 장갑) 36개

- ‘소방청 방화신발 통합구매’전은 소방청에서 전국 시·도 방화신발 구매를 통합발주한 건으로 납품 전 안전화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가 불합격됨에 따라 납품이 39일 지연되어 위약금 1천4백만원을 배상한 건임.
- 다음으로, ‘68m 고가사다리차 제조 구매’전은 세계 최고층 68m 고가사다리차(독일)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수급 및 선적 지연에 따라 16일 납품 지체일수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동 사업이 2021년에도 사고이월이 발생했던 사업이었던 만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인명구조 기초장비 소모품 구매’전은 일부 물건의 해외 선적 지연으로 인해 17일 납품이 지연된 것임.
- 한편, 최근 3년간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발생현황을 보면, 2020년 11건, 2021년 11건, 2022년 5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하여 고무적이라 생각되나 더욱 철저한 검증과 납품과정 감독을 통해 소방장비 보급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22 ~ '20) 계약방법에 따른 지연배상금

구분	연도별				
	합계	2022	2021	2020	
계약방법	일반경쟁	6	1	3	2
	제한경쟁	7	0	2	5
	전자공개	3	0	3	0
	수의계약	5	2	3	0
	조달구매	6	2	0	4
합계	27건	5건	11건	11건	

- 다음으로, 그외수입은 일반 세입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잡수입으로 예산액 5억 28백만원 대비 3억 9천만원(74.0%) 증가한 9억 18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최근 5년간 그외수입 수납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2	2021	2020	2019	2018
예산액(a)	527,682	299,484	266,207	377,215	193,433
징수결정액(b)	917,952	778,741	498,580	276,654	412,247
차액(c=b-a)	390,270	479,257	232,373	△100,561	218,814
증감률(c/a*100)	74.0%	160.0%	87.3%	△26.7%	113.1%

- 주요 증가 사유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소송과 관련해 가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중 과다지급액에 대한 환수로 인해 3억 44백만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 본 소송과 관련하여 2012년 1심 판결³⁾ 취지에 따라 서울시는 수당을 가지급하였는데, 이후 2019년 대법원 판결⁴⁾에서 가지급금 중 휴일시간외수당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가지급한 휴일시간외수당 부분을 다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⁵⁾.

3) 서울중앙지법 1심판결(11.11.17)

- 인용 : ①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무 모두지급(비번일 포함) ②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병급 인정
③ 휴게(식사)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미공제
- 기각 : 순번휴무를 휴가로 인정

4) 대법원 판결(19.10.17.)

- 인용 : ①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무 모두지급(비번일 포함), ② 휴게(식사)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서 미공제
- 기각 : ①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인정 ② 순번휴무를 휴가로 인정

5)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환수계획(2022.11.25. / 시장방침 제207호)

- 이는 예측하지 못한 판결 등에 따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와 소방공무원 양측 모두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점점 연체이자 증가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직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조기에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022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정산(지급·환수) 건 관련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환수 계획(2022.11.25. / 시장방침 제207호)
정산인원	- 지급인원 : 5,274명(재직 4,458 / 퇴직·전출 816) - 환수인원 : 218명(재직 92 / 퇴직·전출 126)
정산기간	- 지 급 일 : 2022. 12. 1.(목) / 12. 14.(수) - 환수기간 : 2022. 12. 1.(목) ~ 12. 30.(금)
정산금액	- 지급금액 : 금44,954,172,030원 - 환수금액 : 금304,900,510원

-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이월된 수입으로 예산액 1천 7백만원 대비 1억 45백만원(878.5%)이 증가한 1억 61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예산편성이 완료된 다음연도 1월에 과태료, 체납액 등의 징수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세입예산액을 추계함에 있어 가급적 징수 가능한 체납액 위주로 산정하되 체납액 징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담아 예산액을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최근 4년간 체납액에 대한 이월사유별 미수납내역을 살펴 보면, 납세태만이 60.7%(47건, 7천 8백만원)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 26.9%(14건, 3천 4백만원), 행방불명 6.3%(6건, 8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6.1%(4건, 8백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참조)

[표] 지난연도수입 부과년도별 미수납내역

(단위 : 천원)

미수납사유	합계		부과년도							
			2021년		2020년		2019년		2019년 이전	
합 계	71건	128,244	17건	32,951	12건	13,758	18건	43,854	24건	37,680
무재산	14건	34,452	1	855	5	8,531	2	12,011	6	13,054
행방불명	6건	8,124			1	424	4	4,512	1	3,188
납세태만	47건	77,791	16	32,096	6	4,803	12	27,331	13	13,561
폐업 또는 부도	4건	7,877							4	7,877
채무회상법에 의한 유예	0건	0								
격리 또는 압원	0건	0								
소송계류	0건	0								
국외이주	0건	0								
자금압박	0건	0								
기타(분납)	0건	0								

- 이처럼 고질적 체납이 누적되면서 누계체납액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불납결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수납을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중 과징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사항을 위반⁶⁾시 부과되는 것으로, 예산액 4천만원 대비 2천 9백만

6) ※ 과징금 부과 예시: 하도급 제한 위반, 착공신고 위반, 소방시설 설계 시 화재안전기준 위반.

원(72.9%) 증가한 6천 9백 만원이 징수결정되었음.

[표] 최근 5년간('22 ~ '18) 과징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2	2021	2020	2019	2018
과징금 예산액	33,425	40,078	33,977	29,175	27,642	36,252
징수결정액	57,834	69,300	53,820	79,970	42,965	43,116
부과건수	15건	14건	12건	17건	10건	23건

- 이는 세입예산 추계 당시 최근 5년간('20~'16)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징수합계액에서 최고·최저 금액을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편성하였으나, 과징금 산정의 경우 업체의 영업정기기간(일)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각 구간별 범위 내 1일 과징금 금액⁷⁾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부과함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발

소방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 등

- 7)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생략)
 2. 개별기준

등급	연간 매출액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1	1억원 이하	10,000
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20,500
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4,000
4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5,000
5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0,000
6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0,000
7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120,000
8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140,000
9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60,000
10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80,000
11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0,000
12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220,000
13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40,000
14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260,000
15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280,000
16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370,000
17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515,000
18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736,000
19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030,000
20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1,058,000

생해 예산편성액 대비 증가한 것임.

- **이행강제금⁸⁾**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비상구 훼손 또는 내부구조 임의 변경 등)으로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함께 부과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예산액 1천 1백만원 대비 5백만원(40.2%) 증가한 1천 6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음.

[표] 최근 5년간('22 ~ '18) 이행강제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2	2021	2020	2019	2018
이행강제금 예산액	10,038	11,416	17,625	10,616	6,000	4,533
징수결정액	12,250	16,000	0	10,000	19,000	16,250
부과건수	2건	2건	0건	1건	4건	5건

- **기타 과태료**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등 소방관련 법령의 위반 시 부과하는 것으로, 예산액 4억 6천만원 대비 2억 26백만원(49.2%) 증가한 6억 86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음.

- 이는 예산추계 대비 부과 건수 및 금액의 증가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최근 5년간('22~'18)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의 대시민 준법 홍보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1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1,068,000
22	5,000억원 초과	1,100,000

8) ※ **이행강제금** : 수인의무의 불이행시에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주어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간접적 강제수단

예)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훼손 및 내부구조 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위법 사항에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표] 최근 5년간('22 ~ '18) 과태료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2	2021	2020	2019	2018
과태료 예산액	460,297	460,156	459,235	449,710	461,930	470,456
징수결정액	537,462	686,421	550,330	456,805	502,605	491,150
수납액	508,887	655,714	508,255	437,658	468,926	473,883
부과건수	1,054건	1,193건	1,135건	822건	1,066건	1,056건

○ 다음으로, 보전수입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예산액 34억 2천만원 대비 16억 15백만원(47.2%) 감소한 18억 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는데

- 이는 당초 예상했던 상환 인원 및 금액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지는 하나 예산편성에 앞서 시중금리의 변동과 상환계획에 대한 사전조사를 보다 면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최근 3년간('22 ~ '20)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 구분	예산액	수납 금액	상환 인원	예산액 대비 수납률
2022	3,420,000	1,805,000	54명	52.8%
2021	2,133,000	3,420,000	52명	160.3%
2020	1,926,649	2,925,000	56명	151.8%

다) 결손처분(결산서 p.37~40 p.117)

○ 소방특별회계 결손처분은 10건(1,278만원)으로, 이 중 9건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제3호⁹⁾에 따라 지방

9)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 경과)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 것이고, 1건은 동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¹⁰⁾에 따라 무재산의 이유로 결손처분한 것이기는 하나

- 결손처분으로 처리하기 전 재산조회 및 행방조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부적절한 결손처분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결손처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소방서	체납 금액	최초 부과 연월	최초 부과금액	결손사유	부과 세입과목
	합 계	12,781				
1	용산	442	2017-03	250	시효소멸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
2	동대문	885	2014-07	500	시효소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3	동대문	3,500	2017-04	2,000	시효소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4	성북	3,540	2014-06	2,000	시효소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5	강남	443	2016-12	250	시효소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6	강남	175	2017-08	100	시효소멸	소방시설공사법위반과태료
7	강남	175	2017-08	100	시효소멸	소방시설공사법위반과태료
8	강남	175	2017-08	100	시효소멸	소방시설공사법위반과태료
9	송파	690	2017-12	400	시효소멸	소방시설공사법위반과태료
10	동작	2,756	2019-06	2,000	무재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라) 미수납액 (결산서 p.37~40, p.121)

- 미수납액은 2억 2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소방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사유	과목	계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202,314	26,463	900	16,000	30,707	128,244
		100%	13.1%	0.4%	7.9%	15.2%	63.4%
	무재산	34,452					34,452
	행방불명	8,124					8,124
	납세태만	112,998			16,000	19,207	77,791
	폐업 또는 부도	7,877					7,877
	자금압박	600				600	
	납기미도래	38,263	26,463	900		10,900	

* 납기미도래 : 연도말 부과로 납부기간 내 회계가 마감되어 미수납 처리된 건

- 상기 [표]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된 세입과목 중 지난연도수입(63.4%)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55.9%), 납기미도래(18.9%), 무재산(1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납세태만 체납자의 경우 고의체납의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수납 독려와 체납 관리를 통해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임.

마) 환급액 (결산서 p.37~40, p.125)

- 환급액은 81만 5천원으로 최근 3년간 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 [표]에서 보여주듯이 환급액 발생 세부사유가 대부분 행정 기관의 착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무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22~'20) 세입결산 중 환급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환급액	행정기관	납세자	기타
				착오	권리구제	
2022	902,173,485	902,015,562	815	735		80
			4건	3건		1건
2021	902,173,485	902,015,562	385	385		
			3건	3건		
2020	871,955,138	871,836,947	1,729	23		1,706
			4건	2건		2건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순계규모)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945,971	4,065	2,746 (-2,746)	1,879 (-1,879)	126 (-126)	-	950,036	923,149	5,866	-	5,866	1,728	19,293 (2.0%)
2021	896,523	3,411	-	-	699 (-699)	-	899,934	857,931	4,065	738	3,327	157	37,781 (4.2%)
2020	856,888	13,323	-	-	1,462 (-1,462)	-	870,211	830,853	3,410	1,360	2,050	715	35,232 (4.0%)

가) 개 요

-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931억 65백만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9,500억 36백만원(순계예산¹¹)을 포함하여 총 1조 8,432억 1백만원(총계예산¹²)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계규모로 1조 8,163억 14백만원이고 순계규모로 9,231억 49백만원임.
- 순계규모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0.6%인 58억 66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192억 93백만원에 해당함.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3~57)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192억 93백만원이며,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2억원 이상 사업은 '소방행정과 기본

11)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12)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경비' 등 18건임. ([표] 참고)

[표] 불용률 10% 이상 또는 집행잔액 2억 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소방행정과	소방활동지원	31,456	30,583			873	2.7%
2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퇴직행사	48	42			6	11.6%
3	소방행정과	기본경비	22,863	20,585			2,278	9.9%
4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인건비계정)	685,992	678,385			7,607	1.1%
5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계정)	22,132	20,600			1,532	6.9%
6	재난대응과	구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4,560	4,112	224		224	4.9%
7	재난대응과	구급대 전문화 향상	637	556			81	12.7%
8	재난대응과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190	168			22	11.3%
9	예방과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1,088	808		136	143	13.1%
10	예방과	서울119소방동요대회 행사운영	28	25			3	11.6%
11	예방과	몸짱 소방관 달력 기부행사	42	38			4	11.6%
12	안전지원과	소방차량교체 및 보강	21,370	18,221	2,856		298	1.3%
13	안전지원과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12,646	12,314			332	2.6%
14	안전지원과	후생복지 지원	11,388	10,904			484	4.2%
15	안전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6,841	15,639			1,202	7.1%
16	안전지원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PTSD)관리	1,074	953			121	11.3%
17	안전지원과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등 건립	738	0			738	100%
18	현장대응단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457	399			58	12.7%

- 이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28억 63백만원 중 22억 78백만원 (9.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수 공무원출장 외에는 외부출장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업무가 전환됨에 따라 국내 여비 19억 3천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 또한 공상자 감소 및 직원동호회 활동 축소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천 6백만원이 미집행됨에 따른 것임.
- ‘인력운영비(인건비계정)’은 예산현액 6,859억 92백만원 중 76억 7백만원(1.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이는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및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질병 휴직자 증가로 보수와 성과상여금 등의 집행액이 감소함에 기인한 것으로 과거 여성 중심의 육아에서 벗어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 다만, 과도한 집행잔액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산편성 시점에 차년도 육아휴직예정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2019 ~ 2022년 휴직자 변동현황

(단위:명)

휴직연도	휴 직 구 분								합계
	육아휴직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일반)		기타휴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총계	710	528	30	4	69	40	63	8	1,452
2022	254	129	8	3	31	15	17	3	460
2021	179	139	7	1	19	16	15	1	377
2020	157	127	8	0	8	5	15	1	321
2019	120	133	7	0	11	4	16	3	294

[표] 2022년 인력운영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사 유
총 계			685,992	678,385	98.9	7,608	1.1	
1	인력 운영비	보수	524,824	520,548	99.2	4,276	0.8	육아휴직자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
4		직급보조비	14,532	14,486	99.7	46	0.6	집행잔액
5		성과상여금	26,422	24,642	93.3	1,781	6.7	육아휴직자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
6		연금부담금	99,444	99,345	99.9	99	0.1	소방재난본부 기관부담금
7		국민건강보험금	20,770	19,364	93.3	1,406	6.7	소방재난본부 기관부담금

○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는 예산현액 221억 32백만원 중 15억 32백만원(6.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소방학교가 생활치료센터로 운영(2020.8.26.지정 ~ 2022.5.25.해제)되면서 당초 예정되었던 공채임용 신규교육대상자가 당초 540명에서 202명 감소한 338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4억 56백만원이 미집행된 것임.

[표] 2022년 인력운영비(소방정책사업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사유
총계			22,132	20,600	20.4	1,532	6.9	
1	인력운영비	보수	3,400	3,374	99	26	0.70	집행잔액
2		기타직보수	6,583	5,127	78	1,456	22.10	코로나로 인한 신규교육 대상자 감소
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540	9,519	100	21	0.20	집행잔액
4		직급보조비	221	215	97	6	2.70	집행잔액
5		성과상여금	224	218	97	6	2.60	집행잔액
6		연금부담금	1,912	1,912	100	-	0.00	-
7		국민건강보험금	252	235	93	17	6.70	집행잔액

- ‘구급대 전문화 향상(시비)’ 사업은 예산현액 6억 37백만원 중 81백만원(12.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표]참조)

[표] 2022년 ‘구급대 전문화 향상(시비)’ 주요사업 세부 집행 내역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이월사유
구조구급정책협의회 등 참석수당	48	27	21	43.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교육 및 대면 회의 등이 중지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569	509	60	10.5	하반기 보직변경, 휴복직 등으로 특수건강 진단만 받고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대원과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구급대체 인력으로 인하여 계획된 인원내 비하여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이 부족하여 집행 잔액 발생

-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구급지도협의회 및 구급평가토론회 등과 관련해 대면 회의 횟수 및

수당지급액이 감소함에 따른 것과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과 관련해 하반기 보직변경, 휴·복직 등으로 건강검진을 미 실시한 대원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다음으로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88백만원으로 1억 43백만원(13.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는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과 관련해 신고 건수(1,460건) 대비 실제 지급된 내역이 1회에 불과함에 따른 것과

- 2018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상자 18명) 이후 국고보조사업¹³⁾으로 진행되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사업 추진 중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영업주가 폐업 및 업종 변경함에 따라 사업대상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상기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의 경우 실제 신고 건수 대비 포상금지급 건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정책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

13) 국비1: 시비1: 민간(영업주)자부담1,

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26억 46백만원 중 3억 32백만원(2.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주요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방화복 전문세탁 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29,328벌¹⁴⁾을 기준으로 5억 86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는 20,006벌만 전문세탁 의뢰가 되어 1억 86백여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 공기호흡용 용기와 관련해 당초 불용폐기(3,000개) 및 안전검사(786개) 대상이었던 용기 중 3,000개와 공기충전기 14대를 국제협력 추진에 따라 몽골로 무상양여하여 용기폐기 및 안전검사 비용 2천 2백만원과 공기충전기 소모품 정기교환 및 수리비 6천 3백만원 등 총 8천 5백만원이 미집행됨에 따른 것임.
 - 상기 방화복 전문세탁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과년도¹⁵⁾ 계획 대비 세탁실적(63.6%)을 살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으로 사료 되는바 향후 보다 치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4) 진압대원 2,444명 × 12개월/월1회

15) 2021년도 방화복 전문세탁 관련: 예산편성 당시 계획 26,820벌, 사업 추진 후 실적 17,079벌

-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13억 88백만원 중 4억 84백만원(4.3%)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주요 사유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의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과 대형화재 및 유해물질접촉 실화재 훈련 등 대면 훈련 활동에 따른 ‘수시진단’으로 분류가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시진단 실시 건수가 급감하여 관련 예산 37억 95백만원 중 33억 78백만원 사용하고 4억 17백만원(10.9%)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 소방공무원 건강검진의 경우 직무 수행 능력 유지, 직업성 질환 예방, 조기 진단과 예방, 그리고 직장 내 건강관리 문화 형성에 중요한 사업으로 누락 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공공운영비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구성되는데 예산 현액 168억 41백만원 중 12억 2백만원(7.1%)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이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및 전년도 전·출입자 정산 비용으로 전체 7,591명(남자 6,861명/여자 760명) 기준으로 28억 4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가입 인원이 7,185명(남자 6,490명/여자 695명)으로 감소하고 남자 보험료 가입 단가(397천원→322천원)가 낮아짐에 따른 것과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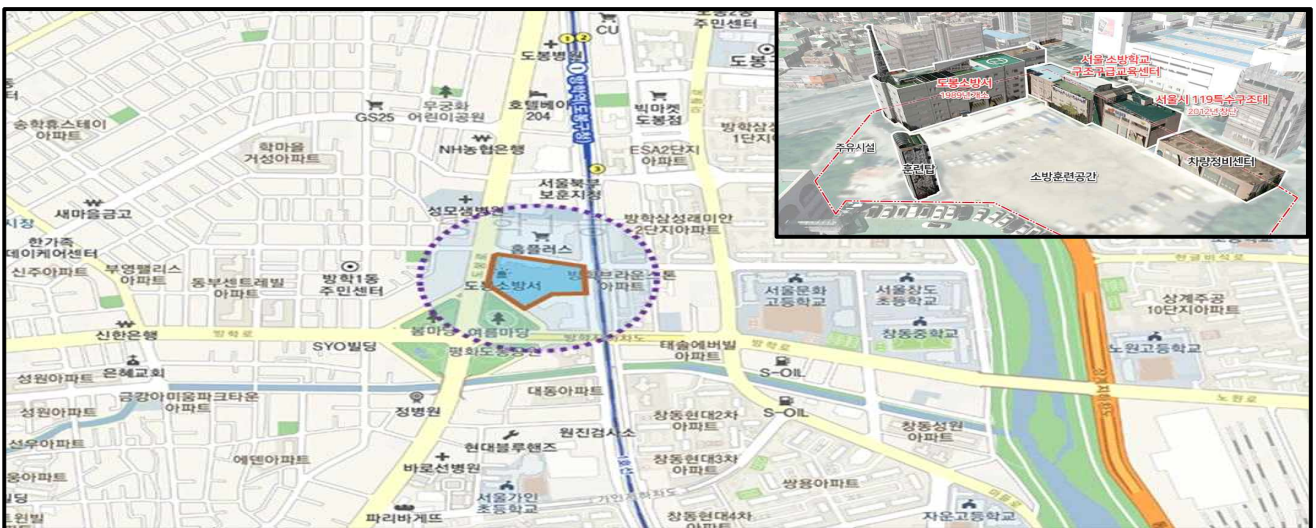
예산 산정시 보험료 예상액(예산편성액)				계약 체결시 보험료(지출액)			
구분	인원수	단가	금액	구분	인원수	단가	금액
남자	6,861	397	2,723,817	남자	6,490	322	2,092,739
여자	730	170	124,100	여자	695	189	131,150
합계			2,847,917	수수료			14,845
전입·전출자 전년도 정산금액							65,452
				합계			2,304,186

- 소방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 및 다자녀출산¹⁶⁾에 따른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해 7,591명 기준으로 139억 9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배정인원이 7,405명(129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임.
-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지급의 경우 정해진 단가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인원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산정기준이 정확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등 건립’은 예산현액 7억 38백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 이는 당초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서에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이외에도 서울시 청년혁신시설(청년혁신파크, 혁신주택, 청년단체 교류시설)을 함께 통합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되던 중 서울

16) 다자녀출산지원비 :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지원

시가 청년혁신시설에 대한 사업을 철회('21.11.)¹⁷⁾하면서 대체 용도에 대한 검토(균형발전본부¹⁸⁾)가 장기화됨에 따른 것임.

- 참고로, '23. 4월 현재 청년혁신시설에 대한 대체용도(공공임대 주택 및 청소년 복합체육관 등)는 확정된 상태로 추후 종합계획 및 행정재심사 등 절차에 따라 정상 추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및 [표] 참조)



[그림]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등 건립 위치도

[표]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등 건립 향후 계획

•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개발 소방재난본부 소관사업 종합계획 수립 (소방재난본부)	'23. 5.
• 안전체험관 건립계획 심의(행정안전부)	'23. 6.
• 공유재산 재심의·관리계획 수립 ¹⁹⁾ (舊.지역발전본부)	'23. 하반기
• '24년 예산편성(설계공모비, 설계비 일부 등)	'23. 하반기
• 설계공모(6개월 소요)	'24. 상반기
• 설계(12개월 소요)	'24. 상반기
• 공사(30개월 소요)	'28. 上 ~ '28. 下

17) 철회사유 :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름 (혁신단체 지원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부족 및 청년단체 교류시설의 활용률 저조 등의 평가)

18)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비 등 소요예산은 관련 실·본부·국 별로 편성하였음.

다) 예산이용(결산서 p.61)

- 예산의 이용은 없음.

라) 예산전용(결산서 p.62)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²⁰)에 의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소방학교 교육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전용([표] 참고) 1건에 1억 25백만원을 충당하여 사용하였음.

[표] 2022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연 번	과 목			전용금액		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1건)				125,512	125,512		
1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소방학교 사이버콘 텐츠 개발 및 훈련 물품 구입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5,512		'22.11.08.	하반기 소방학교 부족교육비 확보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201-01 사무관리비		125,512		

- 예산 전용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편성 당시 코로나19 확산
진자 증가로 인해 소방학교 생활관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20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건축물 용도 변경(청년혁신시설)에 따른 재이행

20)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년 8월~'22년 5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소방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되어 전문교육 등 필수교육 과정 운영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소방학교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훈련물품 구입' 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1억 25백만원을 충당한 것임.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석이 되는 전문 소방공무원 양성 과제를 고려하였을 때,
- 금회의 경우는 불가피한 예산 전용이라 사료되나 향후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마) 예산이체 (결산서 p.63)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바) 예산변경 (결산서 p.64)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
 로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량 보강’ 등 총 3건에 18억 79백만원
 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표] 참고)

[표] 2022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연 번	과 목			변경금액		승인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3건)				1,879,627	1,879,627		
1	소방재난부 안전지원과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40,000		'22.03.14.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량 응급 의료기금 매칭(국고50:시비50) 을 위해 예산변경 사용
		특수목적 음압구급 차량 보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840,000		
2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소방학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8,127		'22.11.08.	하반기 소방학교 부족교육비 확보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201-01 사무관리비		38,127		
3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소방학교 사이버콘 텐츠 개발 및 훈련 물품 구입	207-02 전산개발비	1,500		'22.11.08.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201-01 사무관리비		1,500		

- 먼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량 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응급
 의료기금 교부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당초 구급차량 교체 및 보강을 위해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내에 일반구급차 18대, 음압구급차 8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이후 응급의료기금 내의 사업명이 일반구급차 18대 구매와 관
 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명칭의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으로, 음압구급차 8대 구매와 관련해서는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량 보강’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명으로 분리하여 집행함에 따른 것으로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집행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 이처럼 집행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이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은 결산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당초 원안대로 사업명을 하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음.

○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사업은 앞서 예산 전용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소방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됨에 따라 부족예산의 충당을 위해 3천 9백만원을 변경 사용한 것임.

사) 예비비(결산서 p.67)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²¹⁾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총 2건에 27억 46백만원을 사용하였음.

21)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예비비 사용 현황

(단위: 천원)

연 번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사 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2건)				2,746,394	2,746,394	0		
1	소방재난 본부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사무관리 비	6,000	6,000	0	'22.12.27.	청와대소방대 이전 배치 관련 출동여건 조성 목적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비	1,118,340	1,118,340	0	'22.12.29.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자산및물 품취득비	25,000	25,000	0	'22.12.28.	
		소방활동지원	배상금등	1,597,054	1,597,054	0	'22.12.14.	

○ 먼저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은 제20대 대통령 업무 공간이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이전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소방대(舊 청와대소방대)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예비비 11억 49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 대통령실에 대한 화재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소방대의 업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관저 내 소방대 업무공간 조성 및 차고지 신설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사료됨.

○ 다음으로 ‘소방활동지원’ 사업 배상금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09.12.2~현재, 1심 판결 후 일부 항소)’과 관련해 다툼이 없는 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조기 정산 개별동

의 즉, 지급해야 할 수당액 중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22.9.30~10.14)하여 동의(동의를 95.6%)한 직원들에 대한 조기 정산²²⁾을 시작하였으며,

- 이 중 '전출 및 퇴직자분'에 대하여 청구금액의 지급유보 없이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사용한 것임.

아) 차년도 사고이월²³⁾(결산서 p.155~158)

- 2022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 11건으로 사고이월 대상사업 예산현액 314억 13백만원 대비 18.7%인 58억 66백만원([표] 참고)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2022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이월사유
합계		31,413	5,866	472	18.7	
소방행정과	①-1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시설비)	2,331	594	8	25	소방합동청사 설계준공 기한 미도래, 문화재 발굴조사 잔도처리 및 되매우기, 문화재 발굴유구 창고보관, 소방합동청사 사업부지내 가설방음벽 존치기간 등 연장 진행에 따른 사고이월
	①-2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감리비)	622	339	0	54	감리용역 준공금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②-1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시설비)	1,473	1,459	0	99	지장물 관련 부지조정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별도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한 사업(설계 및 착공)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②-2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감리비)	123	123	0	100	
	②-3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시설부대비)	19	15	0	82	

22) 총 소송 관련자 7,978명 (소송자 1,442명, 미제소자 화해자 6,506명) 중 소송을 진행 중인 자를 제외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6,506명을 대상으로 조기 정산에 동의한 자(6,237명)를 대상으로 먼저 정산을 시작**

23)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서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말함.

관리 부서 (과)	사 업 명	예산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	이월사유
	③-1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사무관리비)	737	24	6	3	중화119안전센터 재건축 민원처리와 BF(장애인 인증)예비인증에 따른 설계추가 반영등으로 준 공일이 '23년 2월로 약 3~4개월 지연됨에 따 라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함
	③-2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공공운영비)	2,351	6	99	0	
재난대응과	④-1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시설비)	1,171	220	38	19	시공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지연, 공사 기간 중 화물연대 파업 및 자재수급 문제(그라 스울 패널) 등 발생에 따른 연내 준공 불가
	④-2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감리비)	16	4	0	27	
안전지원과	⑤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자산및물품취득비)	21,370	2,850	298	13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봉쇄, 반도체 등 부품수 급난으로 소방차량 생산지연에 따른 납품지연
	⑥ 소형사다리차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	232	21	19	

○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를 통
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21억원을
투입하여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입주하는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29억 53백만원 중 31.6%인 9억 32백만원
을 사고이월함.

[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01 ~ 2027.12 ('22.12월 현재 도시계획변경, 설계진행 중)
○ 사업규모 : 15/5층, 연면적 22,235㎡ , 부지면적 1,987㎡
○ 사 업 비 : 1,421억원 (건축비 등 950억원, 상황실 등 전산시스템 471억원)
○ 입주부서 :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
※ 종로구 통합개발 규모
- 대지위치 : 종로구 삼봉로43 (현 종로구청사, 종로소방서 부지)
- 사업규모 : 16/5층 / 연면적 83,564㎡ / 부지면적 8,622㎡
- 입주기관 : ㄱ 종로구청·구의회·보건소 ㄴ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
- 건축물용도 :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 전체사업비 : 4,193억원 (서울시 1,421억원, 종로구 2,772억원)

- 사고이월 사유는 (舊)종로소방서 철거 후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중 ‘조선시대 사복시 관청터²⁴⁾’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발굴되어 ‘22. 6월 예정이었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연기되고 보존방안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후의 공정 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됨에 따른 것임.
 - 참고로, 동 사업과 관련해 2021회계연도에도 종로소방서 철거 과정에서 공법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이처럼 사고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는바,
 - 대규모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은 송파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²⁵⁾에 따라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합

24) 사복시: 임금이 타는 말과 수레를 관장하는 관청

25)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기간 : 2009년 ~ 2025년

▸ 사업비 : 7,485억원(국비 30%, 시비 30%, 농안기금 융자 40%)

▸ 사업규모 : 6개동, 연면적 513,159㎡, 부지면적 531,830㎡

동청사로 건립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16억 15백만원 중 98.9%인 15억 98백만원을 사고이월함.

[표]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 개요

○ 위 치 :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북 3문 옆
○ 사업기간 : '19.03월 ~ '24.08월 ('23.5월 현재 기초 터파기 공사진행 중)
○ 사업규모 : 5/1층, 연면적 2,949.56㎡(안전센터 993.47㎡, 검사소 1,956.09㎡)
○ 사 업 비 : 13,972백만원(안전센터 3,542백만원, 농수산물검사소 10,430백만원) - 농수산물공사 부지(1,138.26㎡) 무상임대 : 토지사용대차 계약서('21.12월 ~ '50.03월)
○ 입주부서 : 가락119안전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표]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	이월사유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시설비	1,473	1,459	0	99	지장물 관련 부지조정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별도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한 사업(설계 및 착공)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감리비	123	123	0	100	
	시설부대비	19	15	0	82	
합 계		1,615	1,598	0	98.9	

- 사고이월 사유는 건립부지 내 하수관거 간섭, 특고압선, 오수배관 등 지장물 관련 부지조정 협의와 가락시장 구역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22.3.3일)가 지연되고 설계용역 준공이 2차례 연장되면서 시공업체 선정도 늦어져 '22년 11월에 착공계가 제출되고 '23년 3월에야 공사가 착공됨에 따른 것임.
- 이는 당초 계획 대비 각종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점에 관련 사전절차의 이행 가능성을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임.

[표]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착공 전 사전절차 내역

연번	과업명	추진일정	비고
1	설계기간 연장(1차,2차)	'20.12월 ~ '22.4월	- 계약기간 변경 (증)158일 - 최초 계획 '20.12.23. ~ '21.11.22. - 변경 계획 '20.12.23. ~ '22.4.29.
2	계약심사 등	'22.5월 ~ '22.9월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건축 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설비 공사 - 사전심의 및 자료보완 ('22.5월 ~ '22.8월)
3	건축 계약심의위원회 등	'22.9월	-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4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22.6월 ~ '22.9월	- 감리용역
5	일상감사 (건축, 전기)	'22.9월 ~ '22.10월	-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건축 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전기 공사
6	건축 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22.9월 ~ '22.10월	- 상위업체 적격심사 탈락하여 2순위 업체 선정으로 착공일정 지연
7	건축 공사 착공	'22.11.17.	- 연말 공사 착공으로 예산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8	기타 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22.10월 ~ '22.11월	- 연말 공사 착공으로 예산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 다음으로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은 예산현액 30억 88만원 중 1%인 3천만원을 사고이월함.

- 사고이월 사유는 동 사업 중 중화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에서 주민민원과 BF인증²⁶⁾에 따른 설계 추가반영 등으로 건축공사 준공이 3~4개월(준공 '23. 3) 지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이사비, 간판 등 부대비), 공공운영비(통신장비 이전 및 설치비)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른 것임.

- BF인증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²⁷⁾에 따라 '15. 7. 29일부터 국가 및

26) **Barrier Free(BF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란?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27)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계과정에서 추가 반영한 것은 당초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

-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1억 87백만원 중 18.8%인 2억 24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표]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	이월사유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시설비	1,171	220	38	19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자재수급 문제, 공사지연 발생으로 사고이월됨
	감리비	16	4	0	27	
합 계		1,187	224	38	19	

- 이는 동 사업 중 ‘특수구조대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건립공사’와 관련해 당초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여 원자재 가격이 폭등²⁸⁾함에

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 ⑤ (생략)

28) 철강, 시멘트 가격 등 예산편성시('21.6.) 대비 40% 이상 상승함

따라 기편성된 예산으로는 훈련장 설치가 어려워 '22.8월 추경 예산(8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이로 인해 설계변경 등 전체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한편,

- 공사업체의 정당한 사유없는 공사지연²⁹⁾이 발생하여 계약기간 ('22.8.2~12.23.)내 준공이 불가해진 것임.('23.1.30.준공).



[사진] 특수구조대 다목적 인명구조 훈련장

-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해서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
는 하나 신속한 사전절차 및 공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면 기한 내 준공이 충분히 가능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마지막으로,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과 '소형사다리차 확충' 사업의 경우, 각각 예산현액 213억 7천만원 중 13.3%인 28억 5천만원과 예산현액 12억원 중 19.3%인 2억 32백만원을 사고이월함.

29) 공정을 85%에서 공사지연이 발생하여 독촉문서 5회 발송함,
2023년(2월9일) 지체상금 부과: 지체일수 38일, 6,450,000원

[표]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소방펌프차 등 10대)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A)	선금지급 (B)	조달수수료 (C)	계 D(A+C)	사고이월 E(D-B)	비고
소방펌프차	3,183	2,228	12	3,196	967	9대중 4대
화학차	244		1	245	245	1대
터널대응 특수화학차	1,262	631		1,262	631	1대
구조공작차	644	451	2	647	196	2대
22m급 굴절차	810			810	810	2대
계	6,143	3,310	15	6,160	2,849	10대

[표] '소형사다리차 확충' 사업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A)	선금지급 (B)	조달수수료 (C)	계 D(A+C)	사고이월 E(D-B)	비고
소형사다리차	1,158	9,264	-	1,158	232	2대

- 소방차량구매의 경우, 특장차 제작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업체는 차량 제작을 위해 자동차 판매업체(현대, 대우, 볼보 등)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여 소방펌프, 배관, 사다리 등 특장 부품 장착 등의 제작을 추진하는데,
-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 반도체 수급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업체로부터 차량공급이 지연되어 차량제작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 소방차량의 경우 화재 및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소방 자원으로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부족분에 대한 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업체와 유기적이고 원만한 협업을 통해 제작과정을 단축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 신규차량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기존에 운용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붙임1]

- 소방재난본부 결산검사 권고사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해당없음